

문서번호	BSKS-3-1-36
제정일자	2012.07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1/6

2012.07.30.제정 2013.03.01.개정 2016.03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3.03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08.30.개정 소판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이라 한다.)의 교원 및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년 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긴 자중 자진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
 - 2. 조기퇴직수당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
 - 3. 희망퇴직수당은 3년이상 15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자진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 단, 중도퇴사자는 제외한다. <호 신설 2022.08.30.>
- 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)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(학교법인 화신학원 산하 교육기관 근속년수 포함)에서 전임교원, 일반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 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긴 자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.<개정 2019.07.01.>
 -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 -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 당 지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.
 - 1.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중인 자<개정 2016.03.01.>
 - 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 - 3.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
 - 4. 기타 명예퇴직, 조기퇴직, 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<개정 2022.08.30.>
- 제4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)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,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3.01.>



문서번호	BSKS-3-1-36
제정일자	2012.07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2/6

- 제5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)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은 연 1회에 한하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교원은 매년 11월 30일까지, 직원은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 1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<개정 2013.02.27.>.
- 제6조(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·결정) ① 총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심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 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02.27.>
 - ② 총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·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상위직 교·직원
 - 2. 장기근속 교·직원
 - ③ 학교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.<항 신설 2013.02.27.>
- **제7조(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)** 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)** ① 명예퇴직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학교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<항 신설 2013.02.27.>
- 제9조(조기퇴직수당) ① 본교에서 전임교원, 일반직원으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에게는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0.03.03>
 - ② 조기퇴직수당의 신청 및 지급방법, 심사·결정 등에 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③ 조기퇴직수당 지급액은 명예퇴직수당액의 70%를 지급한다.<개정 2013.02.27.>
- 제10조(희망퇴직수당) ① 본교의 전임교원 중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근속한 자로 만 50세이상의 자가 구조조정 및 예산감소 등으로 자진 퇴직하는 경우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수 있다.
 - ② 희망퇴직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자에게 기본급여의 3개월분의 범위 내에서,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한자에게 기본급여의 6개월분의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희망퇴직의 신청 및 심사, 승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조 신설 2022.08.30.>



문서번호	BSKS-3-1-36
제정일자	2012.07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3/6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36
제정일자	2012.07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4/6

[별표 1]

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

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
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기본급여 68%의 50% × 정년 잔여월수 <개정 2020.03.03>
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기본급여 68%의 50% × {60+(정년 잔여월수-60)/2} <개정 2020.03.03>
10년 초과인 자	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

- 1.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2. 삭제 <개정 2016.03.01., 2019.07.16.>, <2020.03.03>
- 3.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,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.
- 4.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학교법인 화신학원 정관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.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이 연장된 교·직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.
- 5. 조기퇴직수당 지급액은 명예퇴직수당액의 70%를 지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36
제정일자	2012.07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5/6

[별지 제1호 서식]

명예(조기,희망)퇴직수당지급신청서

성 명				생년월일			
소 속				직 급			
최초임용일	년	월	일	근속기간	년	월	일
정년퇴직일	년	월	일	정년잔여기간	년	월	일
수당청구액	₩ 원						
산출내역							

상기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(조기, 희망)퇴직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(조기, 희망)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.

첨부 : 명예(조기, 희망)퇴직원 1부

20 . . .

신청인: 엔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3-1-36
제정일자	2012.07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8.30.
페이지 수	6/6

[별지 제2호 서식]

명예(조기, 희망) 퇴직원

•소 속: 부산경상대학교 과(계열)

• 직 급:

• 생년월일 :

•성 명:

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이 정년 퇴직일이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명예(조기, 희망)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부산경상대학교 과(계열)

0 0 (인)

학교법인 화신학원 이사장 귀하